



의안번호	제 2023 - 19호
보 고 연 월 일	2023. 9. 18. (제12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1. 개요	2
2. 신규 위촉	2
3.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2
4. 자문위원 명단	3
III. 양형연구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결과 보고 ...	4
1. 개요	4
2. 행사 개요	4
3. 심포지엄 일정	4
4. 심포지엄 주요내용	5
IV. 각종의견 접수 및 처리	11
1. 경찰청	11
2. 온라인청원(청원24) 접수의견 보고	11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13
4.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국민신문고 게시판)	15

【별첨】

경찰청,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수정 관련 참고자료(추가)
청원서(강○주)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56차	2023. 9. 4.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 검토

II.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로 구성

2. 신규 위촉

- 권영철, 김미연, 김영화, 김정호, 박혜진, 소라미, 송란희, 송진성 위원을 2023. 8. 21. 각 신규 위촉

3.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시 : 2023. 9. 4.(월) 11: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중회의실
- 참석 범위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위촉대상자 : 권영철, 김미연, 김영화, 박혜진, 송란희, 송진성
- ※ 위촉대상자인 김정호, 소라미 위원은 사정으로 불참

4. 자문위원 명단(파란색 표시는 신규 자문위원)

2023. 8. 21. 기준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위
학계	김기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AI와 법 연구센터장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소장(임상교수)
언론계	권영철	CBS 대기자(국장)
	김균미	서울신문 논설고문
	김영화	한국일보 뉴스룸국장
시민, 사회단체	김미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
	장현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청년부회장
의료계	송진성	수원고등법원 의무실장 (의사 겸 변호사)

III. 양형연구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결과 보고

1. 개요

- 양형연구회는 『스토킹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스톱킹범죄의 바람직한 양형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 의견을 수렴

2. 행사 개요

- 주 제 : 『스토킹범죄와 양형』
- 일 시 : 2023. 9. 7.(목) 14:00 ~ 17:00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방 청 : 현장 방청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3. 심포지엄 일정

시 간	내 용		
14:00-14:10	개 회 식	사회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전략사업센터장)
		인사 말씀	1. 이상원(양형위원회 위원장) 2. 이주원(양형연구회 회장) 3. 문유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10-15:10	주제 발표	「좌장: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 • 발표 1: 친밀한 파트너 스톱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 방안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발표 2: 스톱킹범죄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 한나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15:10-15:20	휴 식		

시 간	내 용	
15:20-16:50	토 론	<p>김현아(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박천웅(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장진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한얼(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한민경(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p>
16:5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4. 심포지엄 주요내용

(1) 주제발표 1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
 -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에 대한 외국 문헌 연구를 토대로 하여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이 갖는 특성을 살피고,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
 - 현행법은 위험한 스토킹을 통제하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친밀성의 영역에 대한 개입 확대를 자제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친밀성의 맥락에서 많이 발생함
 - 이와 같이 젠더기반폭력으로서의 성질과 친밀성이 고려되지 않은 스토킹의 법적 모델은 현실과 맞지 않아 법 제정 이후 사건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모순과 허점을 남김
 -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
 -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은 당사자들이 형성해온 관계 이력의 맥락에서 발생하여, 잠재적으로 더욱 위협적이고 재범률이 더 높음. 이는 낯선 사람에 의한 스토킹이 더 위험할 것이라는 통념과 상반됨
 -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대체로 위협성이 더 높지만 스토킹의 전형과 동떨어져 있어 다른 관계에서의 스토킹보다 스토킹으

로 인식될 가능성은 낮고 사회적 수용가능성은 높은 경향을 보임

○ 법·정책 개선 방안

- 스토킹 관련 각종 지침을 스토킹과 피해자의 관계성과 스토킹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구체적으로 열거된 행위 외 스토킹행위도 포섭할 수 있도록 포괄적 구성요건 추가 필요. 스토킹이 제3자까지 확장되는 문제를 스토킹처벌법이 포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범위를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확대
- 피해자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별 사례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수사기관도 접근금지 외 스토킹 중단을 명령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에서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2) 주제발표 2

-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가 「스토킹범죄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의 양형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영국의 양형 판단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양형기준 수립방향을 제시
- 2023. 1. 2.부터 2023. 5. 31.까지 1심 또는 항소심이 선고된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사건 1,295건의 판결문 분석 결과

- ▲ 스토킹처벌법위반 단독범행은 563건(43.4%)이었고, 나머지 732건(56.5%)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 ▲ 범죄유형별로는 폭력범죄가 394건으로 전체 경합범죄 1,182건의 33.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주거침입범죄가 214건으로 18.1%, 디지털성범죄가 137건으로 11.5%, 뒤이어 손괴범죄 127건(10.7%), 성범죄 55건(4.6%), 체포·감금범죄 49건(4.1%), 명예훼손범죄 38건(3.2%),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27건(2.2%), 업무방해범죄 26건(2.1%) 순
- ▲ 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이거나 연인관계이었던 경우가 가장 많았고(642건),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관계(106건)
- ▲ 스토킹범죄의 절반 이상(58%)이 연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교제 폭력, 가정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그 다음으로는 이웃 간(7%)의 스토킹범죄임

▲ 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배우자 관계인 경우는 검토 대상 판결 중 58%인 반면, 살인범죄, 강간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서는 79%에 해당하여,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스토킹범죄가 중대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스토킹범죄의 양형요소

- 스토킹범죄가 경합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 고려되어 권고영역이 상향된 사례가 있었음
- 주요 양형 참작 사유로는 스토킹 기간, 재범위험성, 중대범죄로의 발전가능성, 피해 정도(범행 결과), 위법성 인식, 범행 수단(내용)
-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와 스토킹범죄와의 경계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범행 경위가 감경요소로 참작되었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이나 교제상대로부터 이별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연락하는 것 등)

○ 영국 양형기준의 시사점

- 영국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요소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행위',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상당히 변경시킨 경우'를 포함하고, 특별양형인자로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범죄의 영향'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인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서 제외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

(3)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

(가)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의 토론 요지

○ 스토킹범죄의 법·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특징과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스토킹 유형이 제한되어 있음. 스토킹 행위에 포괄적 보충구성요건을 두어야만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 온라인상 스토킹의 포괄적 규정이 없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임

- 재범을 방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 스토킹 기간, 피해자와 관련된 '제3자'의 피해, 가해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접근한 방법 등을 가중요소로 설정할 수 있음
- 양형인자에서 동종 전과의 범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스토킹범죄의 특징을 반영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개념도 구체적으로 별도로 마련하여야 함
- 잠정조치 위반 등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

(나) 박천웅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토론 요지

- 모르는 사람에 의해 자행되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 그리고 그로 유발하는 불쾌감에 대해 2019년 한국인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스토킹범죄자의 행위를 사이코패스나 심신미약 등의 개인적, 심리적 차원으로 축소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에 잠재한 권력관계와 친밀성을 감안하지 못함
- 거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낼 수 없는 관계에서 혹은 지속적 상호작용의 결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의 경우 개입과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난점이 있음
- 한국 사회는 서구 사회에 비해 위계적 성격이 강하고 그에 반해 개인성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고 여겨지기에, 친밀성이나 권력관계에 의한 스토킹범죄에 상대적으로 관용적일 수 있는 여지가 큼

(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토론 요지

-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여성폭력이라는 점, 스토킹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제3자가 이용되거나 스토킹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접근금지가 별다른 의미가 없거나 상황에 대한 착시만 줄 수 있다는 점, 피해자 의사 표시가 피해자의 위험성을 높이고 안전확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점, 중대범죄

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스토킹의 특성과 현장의 경험 등은 양형기준 마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 양형요소로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행위, 피해자 생활방식 변경,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차 피해 야기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감경요소인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은 스토킹의 특성에 기반하여 해석되어야 함
- 스토킹 관련 경합범죄의 양형기준에도 스토킹이 반영되어야 함

(라)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토론 요지

- 스토킹범죄를 규율하는 법률로 독일의 폭력방지법 및 독일 형법 제 238조를 소개함
- 독일 형법 제238조는 2017년 및 2021년 개정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생겼으며, 중범죄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조건부 친고죄 규정은 삭제됨
- 독일의 스토킹범죄 양형 통계 제시: 스토킹범죄 양형 강화 추세

(마) 최한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토론 요지

○ 스토킹범죄의 법·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포괄적 정의 규정을 도입할 경우 수사기관 및 법관의 자의에 따라 소추 및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성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므로 도입 여부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기술적으로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범집행 배제를 확보할 수 있는 포괄적 구성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있음. 법률 개정을 통해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실무상 가족보다도 더 자주 교류하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스토킹행위자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동거인이나 가족에 준하는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라는 유형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면, 전화 진술, 비대면 화상 진술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의견 개선

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심문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용함이 상당함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 대하여

-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행동기를 감경 사유로 적용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력을 약화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범행동기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행위', '피해자가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상당히 변경시킨 경우',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 특히 아동에게 미치는 범죄의 영향',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의 토론 요지

- 스토킹범죄와 주로 경합되는 범죄마다 스토킹범죄 관련 유형이나 양형인자를 추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저해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단일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할 실익이 큼
-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기준 마련도 필요함

I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경찰청

가. 양형기준 관련 의견서 제출(2023. 8. 28.)

-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수정 관련 참고자료(추가)
[별첨1]

나. 주요 내용

(1)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관련

-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시 사법부에서는 스토킹 엄벌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함

(2)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관련

- (검거인원) '22년 마약사범은 총 18,395명으로, '21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하였고, 올해는 '22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22년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21년(4,045명) 대비 20.9%, 그 중 밀수사범은 1,392명으로 '21년(807명) 대비 72.5% 증가하여,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함
- (10~20대 사범)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17년 15.8%에서 '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로 증가하였고,
 - 10대 청소년들도 SNS, 해외직구 등 손쉽게 마약에 접근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17년 119명에서 '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함
- (마약범죄 재범률)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됨
- 이에 반해, 법원의 선고형이 점차 경미해지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기존보다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증가함

2. 온라인청원(청원24) 접수의견 보고

가. 개요

-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위하여 마련된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통하여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 접수된 의견
보고

○ 청원서[별첨2] 접수

나. 결과통지 완료된 접수의견(2023. 8. 31.까지 총 1건)

연번	접수일자	의견 요지
1	2023. 07. 18.	○ 반성문 제출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당함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기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일반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참고

- 특별양형인자 : 당해 범죄유형의 형량에 큰 영향력을 갖는 인자로서 권고 영역(감경/기본/가중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 일반양형인자 : 정해진 권고 영역 내에서 특별양형인자와 함께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인자로서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영향력이 작은 인자
-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이유로 바로 감경인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부가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자주 묻는 질문’ 항목에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3.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2023. 8. 28.까지 총 8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3. 6. 21. ~ 2023. 8. 3.(4)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2	2023. 7. 21.(1)	○개별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3	2023. 8. 1.(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일반양형인자 개정 요청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자원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영업비밀의 보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u>일반 감경인자인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u> 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위 감경인자를 <u>'영업비밀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u> 로 개정하여 주기를 청원함
4	2023. 8. 1.(1)	○아동학대죄에 대한 특별감경인자 개정 요청
5	2023. 8. 2.(1)	○개별사건 법률 상담 요청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 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문의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3. 8. 28.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3건)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 요지
1	2023. 8. 3. ~2023. 8. 18.(2)	○개별사건 처벌과 관련한 반복 민원
2	2023. 8. 22.(1)	○개별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4.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국민신문고 게시판)

가.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3. 8. 28. 까지 총 18건)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3. 6. 13.(1)	○음주운전 강력 처벌 요청
2	2023. 6. 16.(1)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3	2023. 6. 23.(1)	○형사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4	2023. 7. 1.(1)	○특정 사건 판결 형량 강화 요청
5	2023. 7. 7. ~2023. 8. 14.(6)	○개별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
6	2023. 7. 12. ~2023. 8. 4.(2)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7	2023. 7. 13.(1)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8	2023. 7. 20.(1)	○특정 사건 판결에 대한 의견(마약 범죄)
9	2023. 7. 27. ~2023. 8. 4.(2)	○사기범죄 형량 강화 요청
10	2023. 8. 1.(1)	○감형방지 건의 및 중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강화 요청
11	2023. 8. 6(1)	○판결에 대한 의견 및 형량 강화 요청

○ 1번, 2번, 3번, 6번, 7번, 9번, 10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적인 판결 결과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각 개별 사건의 판결 결과나 선고 형량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3. 8. 28. 까지 총 3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3. 8. 17.(1)	○ 성별에 따른 형량 차이에 대한 의견
2	2023. 8. 21.(1)	○ 마약범죄 강력 처벌 요청
3	2023. 8. 22.(1)	○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